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9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법의 목적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재활” 추가	2
2.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 전부 지원	4
3.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 지원 근거 마련	10

I. 개요

1.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9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8. 4.

(3) 회 부 일 : 2026. 8.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법의 목적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재활”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 개정안은 법의 목적 조항에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u>치료</u>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치료</u> · <u>재활</u> ----- ----- ----- ----- ----- -----

나. 검토의견

- ☐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발 방지,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법의 목적에 ‘재활’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현행법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에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재활을 명시함으로써 중독자의 지속적인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법의 목적에 마약류 중독 ‘재활’을 포함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한편 같은 조 제11항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중독자 치료비와 함께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성과보상 및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은 32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사업 예산편성>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치료보호비)	1,350	
권역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00	9개소 × 100만원
우수 치료보호기관 지원	300	3개소 × 100만원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	500	1개소 × 500만원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	150	1개소 × 150만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	6	
소계	3,206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이 중 법 제40조 11항에 따른 치료보호비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라는 내역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 및 인력 지원 비용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치료보호기관 환경개선 지원” 등의 내역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이 법정 시설·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9월 현재 전국에 3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11개소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지역	병 원 명	지역	병 원 명	지역	병 원 명
서울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울산	마더스병원	충남	국립공주병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전북	* 원광대학교 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경기	용인정신병원		신세계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계요병원	전남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 경기도립정신병원		국립나주병원
	* 대동병원		아주편한병원	경북	포항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 이천소망병원	경남	* 국립부곡병원
	* 인천참사랑병원				양산병원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강원	국립춘천병원	경남	한사랑병원
	다사랑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주	* 연강참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대전	* 참다남병원	충북	주사랑병원		
	마인드병원				

* 표시는 권역 치료보호기관(11개소)

□ 치료보호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독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시설·인력 확보비용의 전액지원을 의무화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우수기관 성과보상 및 환경개선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은 지원근거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재량적 지원을 전액 의무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음.

- 다만,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기관별 시설·인력 확보 현황과 기존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액을 산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마약류 중독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은 치료보호기관의 기반 확충뿐 아니라 마약류 중독 예방, 판별검사·치료보호 비용 지원 및 중독자의 재활·사회복귀 지원 등에도 필요함.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시설·인력 확보비용 전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다른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의 여지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기관의 치료역량 확충과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 각 분야의 수요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과 함께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전반의 재정수요를 고려하고, 전액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과 중장기 재정부담, 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액지원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액지원 대상 비용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40조제2항은 지원대상을 각 호의 시설·인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용 인정범위가 재정지원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예를 들어 마약류중독자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진료에도 활용되는 시설·장비·인력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함.
-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지원항목별 국비·지방비 분담방식과 기존 지원사업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일부 기관에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법정 시설·인력 확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전액지원 의무화 여부는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및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되, 지원의무를 강화하는 경우에도 비용 산정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에 필요한 시설·인력 비용의 전액을 의무 지원토록 하는 방안은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 측면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40조제2항)

시설·인력은 치료보호기관의 법령상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자격요건 충족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의무 지원할 경우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33개소)과의 형평성 문제 및 일률적인 비용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능성이 있어 신중검토 필요하고,

법정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의무 지원토록 하는 유사입법례도 찾기 어려우며, 현재와 같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대한의사협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현행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로운 지원사업의 도입으로 실제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사업 확대에 필요한 별도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였던 사람을 동료상담가로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51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1조의9(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상담가(마약류 중독자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상담가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 회복경험자를 동료상담가로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의 개발과 수료증 발급·명부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중독 회복경험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중독자의 치료·재활 참여를 돕고 회복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 중독자 치료·사회재활 인력 양성제도와와의 관계 및 관계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치료보호기관 종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재활상담사 인증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회복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동료상담가는 의료인이나 일반상담인력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인력 양성사업과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중독자 상담과 회복·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활동영역에서 기존 사업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동료상담가의 교육내용과 활동기관, 기존 전문인력과의 협력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동료상담가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여 전문적인 진단·치료와 역할이 혼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동료상담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복경험의 확인방법, 상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교육과정 수료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는 상담 대상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면서도 회복경험자의 참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료상담가가 수행하는 회복경험 공유, 정서적 지지, 치료·재활기관 연계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의 업무와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단·치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상담 중 전문적인 평가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진 또는 관련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도 동료상담가의 활동을 정서적 지지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보조적 역할로 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진단 및 치료와 역할 및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동료상담가의 경험을 활용하는 제도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상담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격과 업무 범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료상담가의 지속적인 교육·관리와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료상담가의 양성이 실제 중독자의 회복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료 이후에도 상담역량을 유지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보수교육의 내용과 실시방식,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전문인력의 자문·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료상담가 본인의 회복 유지와 심리적 부담을 고려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독 경험과 치료정보 등의 비밀을 보호하고, 동료상담가 명부의 관리·이용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도 교육기관과 상담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평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보호기관 및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 회복경험자를 동료상담가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동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에 동의
- (대한의사협회) 동료상담가 제도는 중독 경험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마약류 중독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 및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료상담가의 자격 및 활동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

인이 수행하는 전문적인 진단·치료 영역과 역할이 혼재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료상담가의 활동은 정서적 지지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보조적 역할에 한정하고,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진단 및 치료는 의료인이 담당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기관 및 상담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평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보호기관 및 의료진과의 협력체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